

측정이행률 향상을 위한
지정측정기관 간담회

일시: 2018. 9.5(수) 14:0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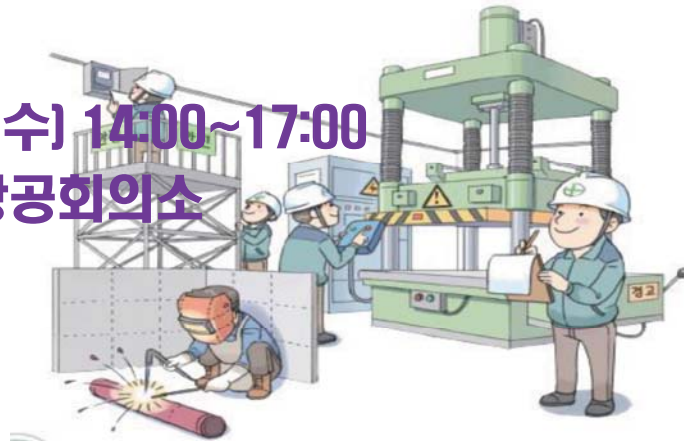
장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측정이행률 제고를 위한

지정측정기관 간담회

일시 : 2018. 9. 5(수) 14:00~17:00

장소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세부일정

시간		내 용	비고
13:30~14:00	30'	등 록	-
14:00~14:10	10'	인 사 말 씀	작업환경부장
14:10~14:40	30'	<주제 1>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향상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등)	작업환경부 신해철 차장대우
14:40~15:10	30'	<주제 2> 건강디딤돌 사업추진 현안 사항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중실으로)	직업건강부 박기혁 차장
15:10~15:30	20'	휴 식	
15:30~16:00	30'	작업환경측정제도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최성필 주부관
16:00~16:50	50'	<주제 3> 소통을 위한 공유의 장 (안전1) 사전질의서 답변 (안전2) 최근 질의회시 사례 및 공유방안 (안전3)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사업 담당자 (참석자 전원)

〈제1부〉 측정이행률 향상



배 경

실시 배경

◆ 소규모 사업장 이행률 사업 실적저조로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8.28, 측정 및 특검 이행률 확대 방안 회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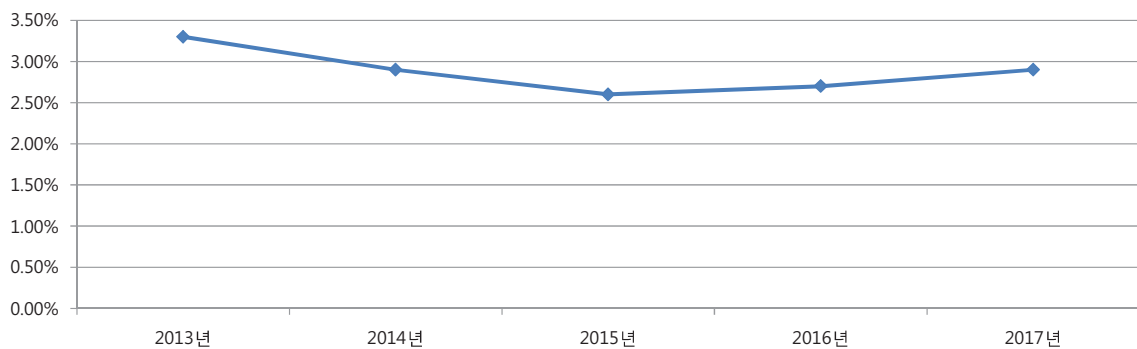
-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현황 공유
- 공단 측정 이행률 관련 추진사업에 따른 당부사항 전달
-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현황분석

년도별

< 년도별 측정이행률 분포(실사업장 기준)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장수	1,977,057	2,187,391	2,367,186	2,457,225	2,507,364
측정사업장	64,346	63,260	62,693	67,295	71,521
이행률(%)	3.3%	2.9%	2.6%	2.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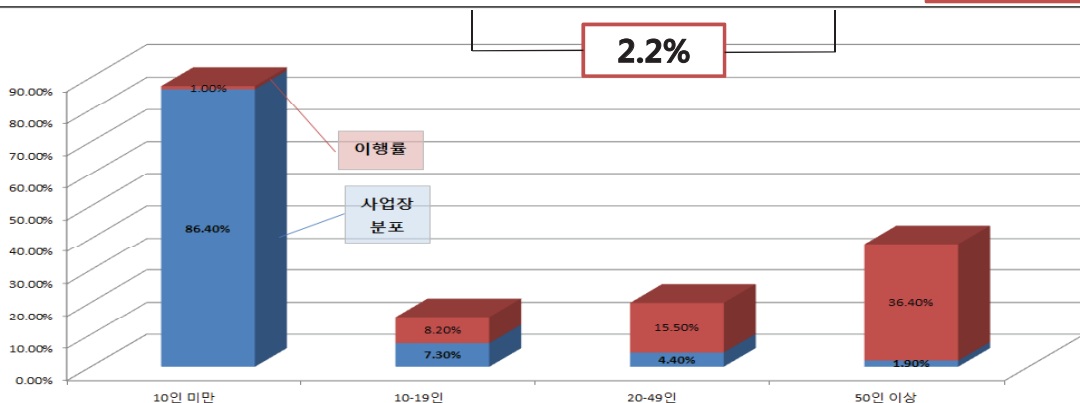


현황분석

규모별

< 2017년도 규모별 측정 이행률(실사업장 기준) >

규모	계	10인 미만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사업장수(분포)	2,507,364 (100%)	2,165,811 (86.4%)	183,805 (7.3%)	109,802 (4.4%)	47,946 (1.9%)
측정사업장	71,521	22,054	15,017	16,988	17,462
이행률(%)	2.9%	1.0%	8.2%	15.5%	36.4%



현황분석

업종별

< 2017년도 업종별 측정이행률(실사업장 기준) >

업종	전체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업종
사업장수(분포)	2,507,364 (100%)	366,763 (14.6%)	397,405 (15.8%)	1,743,196 (69.5%)
측정사업장	71,521	60,259	3,119	8,143
이행률(%)	2.9%	16.4%	0.8%	0.5%

◆ 전체 사업장 현황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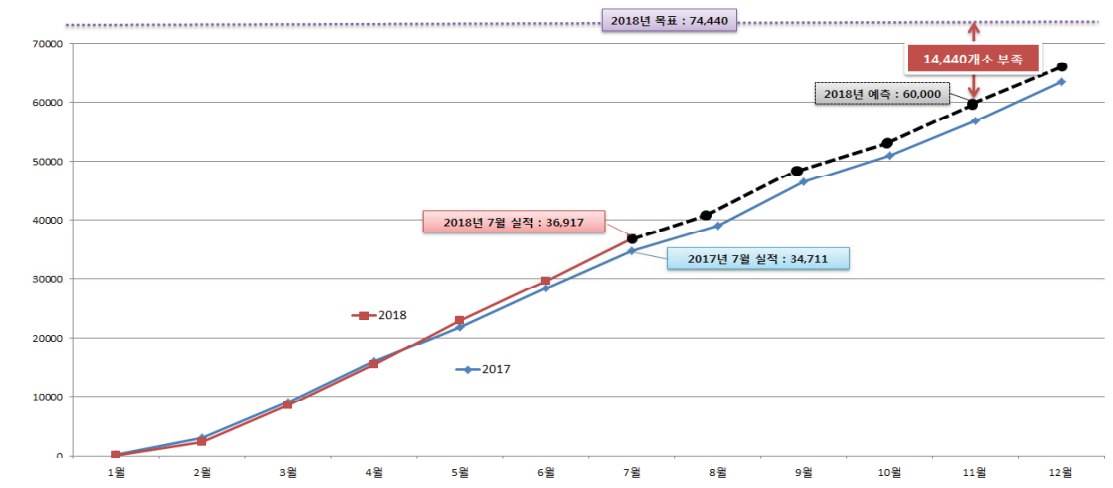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이행률 향상에 집중

현황 분석

향후 추이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측정 이행률(7월 측정건수, 전산보고일 기준) >

구분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개소)	50인 미만 제조업 측정 사업장(개소)	이행률 (%)	비고
'17년 7월	355,960	34,711	9.751	
'18년 7월	361,450	36,850	10.195	



현황 분석

경기동향

- (산업동향) 서비스업 증가, 제조업·건설업과 광공업 등의 생산 전월 대비 감소[통계청 7.31]
 - 자동차(-7.3%), 화학제품(-3.6%), 주택·공장·창고 등 건축(-16.9%), 도로·교량, 철도·궤도 등 토목(-22.6%)
- (고용동향)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고용 큰 폭 감소[기획재정부 8.17]
 -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부진 등 제조업 취업자수 전년 동기 대비 127만명 ↓
- (폐업현황)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4~5만개소가 폐업되며, 특히 '16년도에 제조업 폐업 사업장이 높게 나타남
 - '14년(47,163개소) → '15년(45,499개소) → '16년(54,287개소)

◆ 한계점 : 제조업 등 생산 둔화로 고용감소, 폐업 사업장 증가 등
소규모 사업장 측정이행 확대에 부정적 환경

측정이행을 사업 현황

공 단

사업명	대상	실적(7월)	비고
측정 비용지원	20인 미만	선정 : 36,544개소(목표대비 73%) 지급 : 19,701개소(목표대비 39%)	'18년 예산증액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10인 미만	측정미실시 7,014개소 발굴	
측정 전산보고 통계	50인 미만 제조업	측정주기 미준수 844개소	
지정측정기관 평가	전사업장	신규사업장 발굴 평가항목 10% 반영	'18년 신설

고용노동부

◆ 기초 산업보건제도 지원 및 관리 강화 수립 시행

-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 측정 신규사업장 발굴 ; 기술지원, 민간위탁, 알리미 등 공단사업 연계
- 산재보험 신규가입 사업장 확인 및 측정 제도 안내(분기별) : 측정기관 연계

측정이행률 추진 사업 현황

1)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 사업 목적

화학물질 유해성 인지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등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핵심정보제공 및 교육실시를 통한 직업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

□ 사업 대상

10인 미만 화학물질 유해성 인지 취약 사업장으로 8개 업종 중점 지원

① 화학제품제조업, ② 기계기구제조업, ③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④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⑤ 도금업, ⑥ 기타제조업, ⑦ 도자기 및 기타요업 제품제조업, ⑧ 전자제품제조업

⇒ '17년 이후 신규 설립장 및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 사업장 우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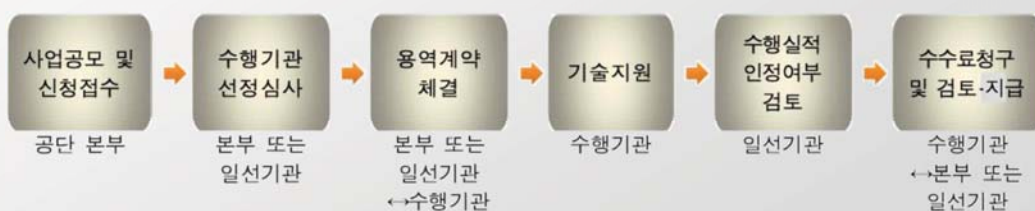
측정이행률 추진 사업 현황

1)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 지원한계

1일 최대 4개소 지원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행기관
타사업(작업환경측정 등) 실시일에 병행(하루 측정 1개소 + 알리미 1개소)
가능 (단, 보건관리대행 업무와 동일한 날짜에 알리미 사업 수행 불가)

□ 지원절차



* 수수료 : 사업수행 물량 기준(25,000원/개소)으로 지급

측정이행을 추진 사업 현황

1)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 추진실적(2017년)

(대상) 측정·특검 미 실시 발굴
사업장 17,463개소에 대한 조치
(기간) '18.1.10~5.31

□ 추진실적(2018년 7월)

(대상) 측정·특검 미 실시 발굴
사업장 약 7,000개소에 대한
조치 예정

→ 방문조사 협조



측정이행을 추진 사업 현황

2) 지정측정기관 평가 - 측정이행을 발굴 노력도 10%

□ 지표항목 : 신규사업장 발굴율(배점:100)

-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이후 측정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사업장 발굴을 평가
- 기관의 측정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측정비율을 비교하여 평가

< 신규사업장 발굴을 배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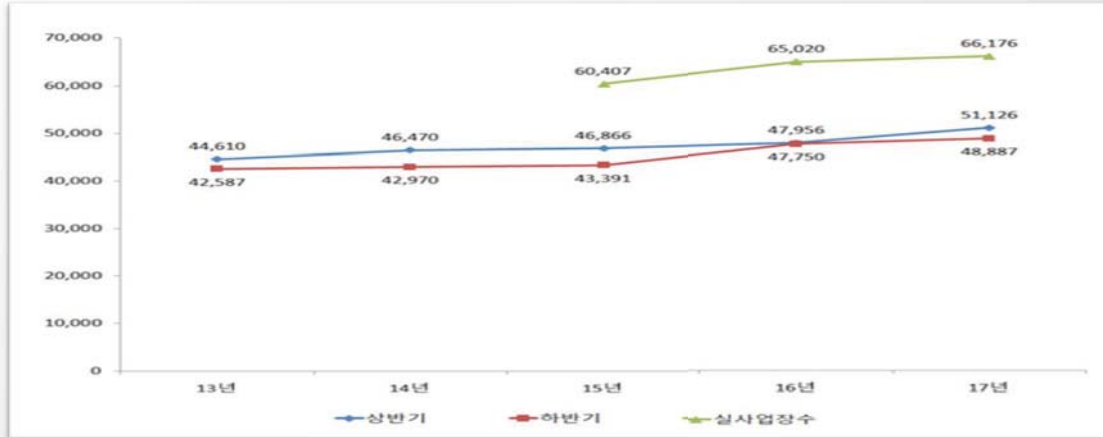
평가항목 B.3.1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신규사업장 발굴율	① 신규사업장 발굴율 20%이상	☐ 100
	② 신규사업장 발굴율 15%이상~20%미만	☐ 90
	③ 신규사업장 발굴율 10%이상~15%미만	☐ 70
	④ 신규사업장 발굴율 5%이상~10%미만	☐ 50
	⑤ 신규사업장 발굴율 5%미만	☐ 30
	⑥ 신규사업장 발굴율 없음(0)	☐ 0

→ 지표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크며,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 필요

측정이행률 추진 사업 현황

3) 2017년도 측정결과 DB분석

□ 최근 5년 ('13년~ '17년)간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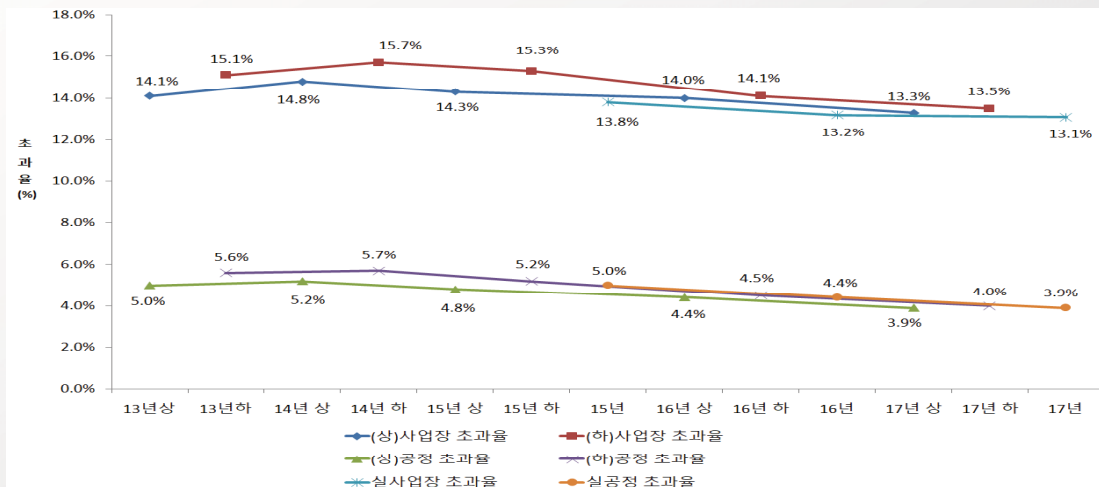


→ 전년대비 측정실시 사업장 상반기 약6.6% 증가, 하반기 약 2.4% 증가

측정이행률 추진 사업 현황

3) 2017년도 측정결과 DB분석

□ 최근 5년 ('13년~ '17년)간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및 공정 초과율 현황



→ 17년도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비율은 상반기 13.3%, 하반기 13.5%로서 최근 5년간 중 가장 낮은 수준

측정이행을 추진 사업 현황

3) 2017년도 측정결과 DB분석

□ 전년도 측정주기 초과 사업장 현황

대상 : 50인 미만 제조업사업장 중 17년도 측정 실시하였으나
18년 7월 현재 미실시 사업장 약800개소 파악됨.

조치계획 : 화학물질 알리미사업의 측정제도 미이행사업장 보고와
병행하여 고용노동부 보고 예정

측정이행을 향상 대책

공단, 고용노동부

◆ 측정 미이행 사업장 제도 안내 및 현장방문

-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으로 발굴된 **측정제도 미이행 사업장**(10인미만, 약 7,000개소)
- 측정DB분석에 따른 **측정주기 초과 사업장** (50인 미만, 약 800개소)

◆ 측정 이행 향상 연계 사업 추진

- 각종기술지원 및 감독, 민간위탁 등 공단사업 연계하여 **미이행 사업장 발굴**
- 지정측정기관 평가 지표(**신규사업장 발굴율 신설**) 등 반영

※ **측정특검 비용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

측정기관

◆ 측정제도 미이행 사업장 방문조사 협조

◆ 측정비용지원 대상선정 사업장 조기실기 → **11월말까지 전산입력 요청**

- 목표 미달성시 예산 삭감 → 사업장, 측정기관 혜택 축소

◆ 지정측정기관 평가 지표 유지

측정이행률 향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안)

◆ 신규사업장 발굴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제도 부활(예산확보 필요)

14~15년 추진현황

● 신규 작업환경측정사업장 발굴 우수기관 포상

- 선정기관 수 : 신규사업장 발굴실적이 우수한 상위 약 7개 기관
- 평가기준 :
 - ☞ 측정기관 평가 결과 (20%)
 - ☞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도 (20%)
 - ☞ 신규발굴지원율 (60%)
- 포상 방법 : 현금지급 (기관별 백만원)



<제2부> 측정비용지원 사업

「건강 디딤돌」 사업 추진 현황 (9.3기준)

① 추진 현황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목표 : 5만개소, 17,919백만원)

분기	구분	신청		선정		지급	
		개소	예산금액 (백만원)	개소	예산금액 (백만원)	개소	금액 (백만원)
1분기	신규	731	391	672	360	-	-
	지속	10,633	3,403	10,000	3,200	-	-
	소계	11,364	3,794	10,672	3,560	-	-
2분기	신규	3,252	1,740	3,141	1,680	1,678	873
	지속	8,978	2,873	8,346	2,671	10,005	3,214
	소계	12,230	4,613	11,487	4,351	11,683	4,087
3분기	신규	3,172	1,697	2,868	1,534	1,748	971
	지속	13,422	4,295	12,508	4,003	8,611	2,809
	소계	16,594	5,992	15,376	5,537	10,359	3,780
누적	신규	7,155	3,828	6,681	3,574	3,426	1,844
	지속	33,033	10,571	30,854	9,873	18,616	6,023
	합계	40,188	14,399	37,535	13,447	22,042	7,867*

- 목표 대비 現 75% 대상 선정되었고, 지급은 44% 집행

* 사업장당 평균 지원 금액 : 신규(535천원), 지속(320천원)

- 대상 선정 37,535개소 중 15,493개소는 미측정(또는 미청구)

※ 신규 사업장 비율은 0.4%p 증가 : '17년(17.4%) → '18년(17.8%)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목표 : 35만명, 19,826백만원)

분기	구분	신청		선정		지급	
		인원	예산금액 (백만원)	인원	예산금액 (백만원)	인원	금액 (백만원)
누적	20인	121,167	6,725	110,710	6,144	34,067	1,911
	건설	140,704	12,509	133,732	11,889	53,287	4,740
	합계	261,871	19,234	244,442	18,033	87,354	6,651*

- 지급금액 : 6,651백만원(목표 대비 33.5% 집행), 선정은 現 91%

* 근로자당 평균 지원 금액 : 20인 미만(55천원), 건설일용직(88천원)

- 대상 선정 244,442명 중 64.3%(157,088명)은 검진 미실시(또는 미청구)

②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한계점

○ 비용지원 신청 후 대상 선정까지 장시간 소요

- 고용보험 가입자수(20인 미만 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의뢰 및 회신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 사업주 불만, 측정·특검 실시 지연

○ 고용보험서류 제출이 어려워 비용지원사업 기피

-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인 내역을 일선기관 담당자 앞으로 팩스 송부(수시·임시 신청 기간) → 사업주가 어려워하고 귀찮아 함

○ 소규모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제외*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대상 여부 판단

* 청소·경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 형태는 「건강 디딤돌」 지원 불가

○ 20인 미만 측정·특검 비용지원 대상 전수 홍보 한계

- 공단 및 기관에서 「건강 디딤돌」 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나, 여전히 많은 사업주가 자부담*으로 기초제도 이행

* 특검비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자부담으로 실시한 검진인원이 2,786명이며, 약 1.5억원에 해당_8.20 기준

○ 특검기관평가 결과 C등급 기관의 비용지원사업 참여 배제

- 사업주가 희망 검진 병원을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특검기관평가결과가 아니라 접근성으로 여김

※ C등급 기관(26개)에서 실시한 20인 미만 및 건설일용직 검진 인원 8,763명(약 5억원)_8.21기준

○ 소규모 사업장의 하반기 특검 실시 집중

- 특검 비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연말에 검진을 실시하여, 비용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인원 다수* 발생

* '17년 11월, 12월 검진 후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인원 2,530명

③ 「건강 디딤돌」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측정 및 특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1.17, 1.18)

- '18년도 주요 비용지원사업 추진방침, 사업 참여 독려 요청 및 '17년도와 달라진 사항 등 설명(229개 기관 참석)

○ 국민일보, 매일경제 등 12개 일간지에 비용지원사업 개시 신문 공고 (1.22, 1.23)

○ 측정 및 특검 제도 및 비용지원 사업 홍보(1.31, 2.26)

- 측정 및 특검제도, 건강 디딤돌 사업 홍보 리플렛 140,000부* 배포
* 과거('16,'17년) 측정 및 특검 실시 사업장 61,774개소, 알리미 사업 40,000개소 등에 배포

○ 건강 디딤돌 사업 참여 독려 안내

- 측정기관(비용지원사업 참여 166개소)을 대상으로 측정 시 반드시 특검 비용지원이 연계토록 협조요청 공문 발송(3.26) 및 유선 안내(8.7)

○ 상반기 측정·특검 조기 실시 안내(일선기관, 6월)

- 상반기 비용지원 대상선정 사업장 중 측정·특검 미실시 사업장(측정 6,984개소, 특검 11,226개소)을 대상으로 조기 실시 안내

○ 건설업 보건관리자 대상 건강디딤돌 사업 홍보(7.25)

- 건설업 보건관리자 협의체 BAND(회원:858명)에 참여 독려

○ 특검 미실시 사업장 실시 독려 안내(7.27)

- 상반기 측정·특검 비용지원 대상선정 사업장 중 특검 미실시 사업장 25,270개소(10인 미만 : 18,835개소, 10인~20인 미만 : 6,435개소)

※ 10인 미만 사업장은 SMS 발송, 그 외 고용노동부 명의 공문 발송

○ 특수건강진단 기관 대상 비용지원사업 협조 요청(7.30)

- 비용지원사업 참여 특검 기관(277개소)에 아래 사항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시 적극 「건강 디딤돌」 사업으로 검진 실시② 귀 기관에서 특검을 수검받고자 희망하는 대상사업장*에 대한 검진(가급적 9월이내 완료) 독려 안내③ K2B를 통한 결과 파일 전송 시 수처, 판정결과 및 근로자 소속 사업장 관리번호 등 철저히 확인 후 전송 |
|---|

※ 유선을 통해 협조 요청 공문 내용을 특검 기관에 再 안내 실시(본부, 8.7)

○ **작업환경측정 기관 대상 비용지원사업 협조 요청(7.31)**

- 비용지원사업 참여 측정 기관(163개소)에 아래 사항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① 2018.01.01.~09.30.기간 중 20인 미만 비국고 측정 완료 또는 실시 예정 사업장 리스트 파악(기존+신규) 후 공단 본부로 송부
 - ※ 공단 본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수(20인 미만) 확인을 통해 일괄 대상 선정
- ② 대상 선정된 사업장은 K2B에서 '자체반송 후 국고파일로 재전송' 또는 '국고파일로 전송'

○ **건설일용직 대상 비용지원 신청 안내(8.20)**

- 특검기관(211개소) 대상으로 건설일용직* 비용지원 신청을 독려하도록 안내
 - *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정기보수 기간(9월, 10월) 도래 예정

○ **클린 및 민간위탁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일선기관) 클린투자완료 미완료 사업장(900개소) 대상 유선안내(8.21)
-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사업장(1,301개소) 대상 검진 실시 독려(8월~)

4] 향후 협조 사항

○ **K2B 공지(7.31)사항 관련**

-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선정 여부 확인 및 대상은 국고 파일 전송
- 기 전송한 파일은 반송 후 국고 파일로 즉시 재전송

○ **측정 비용지원 대상은 조기 측정 실시**

- 비용지원 대상은 우선적으로 측정 실시 후 비용 청구 및 반송 파일은 수시로 확인 후 재전송
 - ※ 가급적 10월말까지 측정 실시 후 11월 말까지 전송 완료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연계**

- 작업환경측정 당일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특검 실시 유무를 확인하고 특검 비용지원 사업 안내(신청방법도 간략히)

작업환경측정 제도 운영방안(고용노동부)

MEMO

〈제3부〉 공유의 장



소통과 공유의 장

〈안건 1〉 사전질의 답변

비용지원

1. 측정 디딤돌사업 숫자가 낮아 현실적인 비용산정이 필요합니다.

측정방법

1. 주52시간 작업시간 변경에 따른 측정포집시간을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통과 공유의 장

〈안건 1〉 사전질의 답변

측정제도 개선

1. 산재 신규사업장에 대한 측정실시 의무화 및 신규사업장 개발 독려
2. 사업주가 측정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부 제공 의무화
3. 사업주는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록부 작성의무화 및 비치, 제공 의무화 강제필요

소통과 공유의 장

〈안건 1〉 사전질의 답변

측정 미이행 사업장 관리

1. 기존측정 실시 사업장 중 사업주 거부 등의 사유로 미이행 사업장 현황 파악 및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2. 측정을 1번이상 실시하고 미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치
(예) 고용노동부나 공단명의로 안내공문 발송
3. 신규사업장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 체계 구축(지정측정기관에서 발굴한)
4. 기존 측정사업장 중 반기별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노동지청의 관리감독 강화

소통과 공유의 장

〈안건 2〉 최근 질의회시 사례 및 공유방안



질의

현재 사용중인 페인트 물질에 금속류(ex, 산화철, 알루미늄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페인트 작업형태가 스프레이 분사방식이 아닌 롤링작업과 붓칠작업으로만 작업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속물질에 대해서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

답변

<답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사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시행규칙 98조)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질의 노출여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액상 페인트에 함유된 금속류가 롤링작업과 붓칠작업으로 작업 중 금속류의 노출이 없다면(일반적으로 금속류는 액상 페인트에 함유되어 증기형태로 금속류의 노출 우려는 거의 없음)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대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롤링 또는 붓칠작업 후속공정에서 연마 등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건조된 페인트에 함유된 금속류가 분진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통과 공유의 장

〈안건 2〉 최근 질의회시 사례 및 공유방안



질의

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른 정기측정(6개월에 1회 이상) 및 주기완화(1년에 1회)규정에서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공정은 주기 완화 대상(소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A라는 사업장에서 2016년 측정을 시작하였고,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전공정 실시 후, 노출기준 미만으로
2017년 상반기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전공정 측정 하였습니다.
여기서 2018년 측정은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 측정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 합니다.

소통과 공유의 장

〈안건 2〉 최근 질의회시 사례 및 공유방안

답변

<답변>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A사업장의 작업공정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공정과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공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6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산안법 시행규칙 93조의4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횟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상반기에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은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특별관리물질 취급공정은 주기 완화 대상(소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횟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산안법 시행규칙 93조의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공유의 장

〈안전 2〉 최근 질의회시 사례 및 공유방안

○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하는 작업장(규칙 제93조)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적용하지 않음

○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규칙 제93조)

허용소비량 (안전보건규칙 제421조)

- 작업장 공기의 부피(m^3)를 15로 나눈 양으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이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은 작업 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

㉔ 작업장의 체적이 $300m^3$ 인 작업장 내에서 시간당 톨루엔을 5g 사용하고 있는 경우, $5_{(g)} < 10$ ($150m^3/15$) 이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

- * 체적의 부피가 $150m^3$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3$ 을 그 체적으로 한다

☞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만 적용

☞ 참고 : 특별관리물질이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측정비대상에 해당하며, 관리대상물질 규정(안전보건에 관한규칙 제3편 제1장)은 적용(중량비율 이상일 경우)함.

소통과 공유의 장

〈안전 2〉 최근 질의회시 사례 및 공유방안

답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산안법 제2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측정 대상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3가지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① 해당 작업(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측정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1의 5) 인가?
- ② 해당 유해인자가 노출 가능한 형태로 발생(원재료 또는 작업과정의 부산물 포함)되고 있는가?
- ③ 근로자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가?(* 규칙 제93조의 측정제외 대상, 작업조건, 작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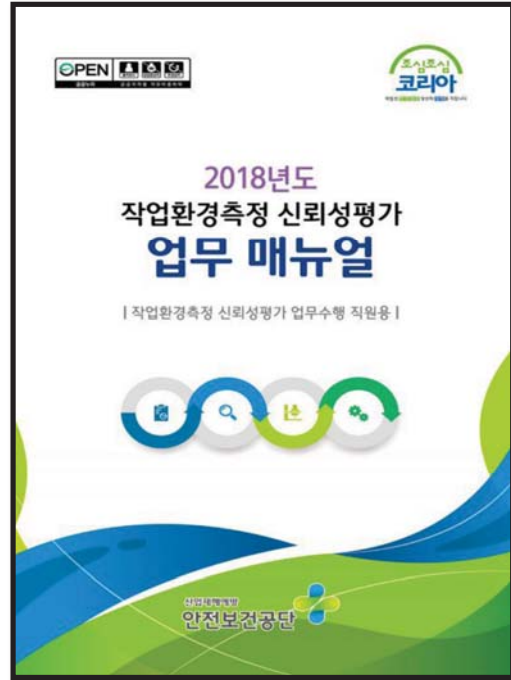
Q1), Q3)은 작업과정의 부산물 등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항 해당>.

Q2)의 질의 내용만으로 대상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③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 작업에서 근로자 노출이 전혀 없는 경우는 비대상이며, 근로자 노출이 있다 하더라도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 등은 측정 제외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하며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단시간작업”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하며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측정 제외(다만, 특별관리물질과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적용하지 않음)

소통과 공유의 장

〈안전 2〉 최근 질의회시 사례 및 공유방안



소통과 공유의 장

〈안전 2〉 최근 질의회시 사례 및 공유방안

MEMO

소통과 공유의 장

〈안건 3〉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MEMO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THANK YOU!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